

#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

의안 번호	301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2월 31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2022년 1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바, 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운영의 목적을 밝힘(안 제1조).
- 나. 의회 공무원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의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의회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을 때의 징수 규정을 정함(안 제4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##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여비의 지급구분)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여비는 계급별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

제3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,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영 제17조제1항 단서·제22조 단서·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·제2항·제4항 중 “소속 장관”과 제28조 중 “소속 기관의 장”은 “서울특별시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본다.
2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3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”는 “「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”로 보며, “인사혁신처장”은 “의장”으로 본다.
4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
5.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.

6.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, 같은 조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.

가.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

나. 영 제29조제2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

7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(여비 부당 수령의 가산징수)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